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3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최형두·고동진·조인철

박성민 · 서지영 · 박정훈

조정훈 • 윤영석 • 이헌승

유상범・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대부업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부업을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대부업을 방지하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금업법」을 개정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한 순자산 요건으로 5,000만엔 이상을 설정하며, 영업소마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대부업무취급주심자)를 배치하여 대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법대부업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대부업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5, 제5조의4, 제19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의4에 따른 영업소별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성명 및 등록 번호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호"를 "제4호의2, 제5호"로 한다.

4의2. 영업소마다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둘 것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대부업취급자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대부업 취급 자 격을 가진 사람(이하 "대부업취급자격인"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대부업취급자격인은 그 영업소에서 업무총괄사용인 및 직원이 대부업등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업무총괄사용

- 인 및 직원은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조언·지도 등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 ③ 대부업자등은 영업소의 대부업취급자격인 수가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 취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 관련 자격증을소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대부 업 취급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부업 취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⑦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및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⑧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업취급자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 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대부업취급자격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 (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4. 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⑨ 제5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5조의4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수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존 대부업자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등록갱신을 하는 때부터 제3조, 제3조의5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 등) ①・② (생 략)	제3조(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3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			
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5조의4에 따른 영업소		
	별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성명		
	<u>및 등록번호</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1. <u>3억원</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			

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u><신 설></u>

- 5. (생략)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제2호, 제3호, <u>제5호</u>의 요건을 갖출 것

4. ~ 7. (생략)

<신 설>

·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업소마다 제5조의4제1
항에 따라 대부업취급자격인
을 둘 것
5. (현행과 같음)
2
<u>.</u>
1. (현행과 같음)
2. <u>3억원</u>
<u>.</u>
 3제4호의
3. <u>제4오기</u> 2, 제5호
2, 제3호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4(대부업취급자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대
부업 취급 자격을 가진 사람
(이하 "대부업취급자격인"라 한
다)을 두어야 한다.

- ② 대부업취급자격인은 그 영업소에서 업무총괄사용인 및 직원이 대부업등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업무총괄사용인 및 직원은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조언·지도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대부업자등은 영업소의 대 부업취급자격인 수가 제1항에 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수를 충족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 취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실시하 는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 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에게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대부업 취급 자격증을 내주어 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부업 취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①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및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정한다.
- ⑧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업취급자격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신 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 <삭 제> 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대부업취급자격인으로서 직 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 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4. 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⑨ 제5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 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 서도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① 제3조 또는 제3 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 부업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u> <u>자</u>

2. ~ 5. (생략)

② (생 략)

<신 설>

- ③ <u>제1항 및 제2항</u>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 다.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략) <신설>
 - 3. ~ 12. (생략)
 - ②·③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	------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5조의4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u>⑤</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1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 여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수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 3.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